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 1. 제안이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및 사망위로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노후를 지원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변경(안 제3조)

- 구미시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변경

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 변경(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조례안 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미시에 연속하여 1년 이상”을 “구미시에”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5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u>구미시에</u> 연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br>----- <u>구미시에</u> -----<br>----- . -----<br>-----<br>-----<br>-----<br>--.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제4조(지원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br>-----<br>-----<br>----- .                                                  |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u>3만원</u> 지급                                                                                      | 1. -----<br>----- <u>5만원</u> -----                                                            |
|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u>15만원</u> 지급                                                                                | 2. -----<br>----- <u>30만원</u>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함에 따라 세출발생(조례 제4조)

###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계한다.

나.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할 경우 2013년 490,500천원을 포함하여 2017년까지 2,443,500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1]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액

(단위:천원)

| 구분 \ 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계       | 490,500 | 489,600 | 488,700 | 487,800 | 486,900 | 2,443,500 |
| 참전명예수당  | 480,000 | 477,600 | 475,200 | 472,800 | 470,400 | 2,376,000 |
| 사망위로금   | 10,500  | 12,000  | 13,500  | 15,000  | 16,500  | 67,500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 연도<br>구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도비       | 일반회계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기금   |         |         |         |         |         |           |
| 시·군비     |      | 490,500 | 489,600 | 488,700 | 487,800 | 486,900 | 2,443,500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490,500 | 489,600 | 488,700 | 487,800 | 486,900 | 2,443,500 |

#### 5. 부대의견

본 추계결과는 참전유공자 전입·전출과 사망자가 증·감 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

#### 6.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주민생활지원과 윤희선  |
| 연락처    | 054-480-5102 |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인원이 2013년 2,000명, 2014년 1,990명, 2015년 1,980명, 2016년 1,970명, 2017년 1,960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자가 2013년 70명, 2014년 80명, 2015년 90명, 2016년 100명, 2017년 110명으로 추정하여 산정 하였음.

가. 참전명예수당 산출내역(추가비용)

- 2013년 : 2,000명 × 월 20,000원 × 12개월 = 480,000,000원

나. 사망위로금 산출내역(추가비용)

- 2013년 : 70명 × 150,000원 = 10,500,000원